

의안번호	2205393
의 퇴 인	이양수의원
회 답 일	2024. 12. 11.
추 계 번호	24B493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추가로 수립하고,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79억 1,400만원, 2030년 5억 1,3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99억 6,600만원(연평균 39억 9,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제1항)	17,401	—	—	—	—	17,401	3,480
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등(안 제33조제1항)	513	513	513	513	513	2,565	513
합계	17,914	513	513	513	513	19,966	3,993

주: 1. 대상지역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38개소로 가정

2. 기본계획은 추계 첫해인 2026년에 모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6·8호(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제2항) 6. “ <u>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u> ”이란 시·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이하 같음)· <u>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u> 또는 특별자치시 소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의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함 8. “ <u>계획수립권자</u> ”란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 <u>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u> 또는 특별자치시장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을 말함 ※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임	
2	안 제7조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같은 조 제2항 신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다만, 계획수립권자 관할 구역의 농촌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1항) ※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 확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고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계획수립권자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음(제2항)	의무·재량 규정
3	안 제16조제1항(농촌협약의 체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u>사업 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제1항)</u> ※ 농촌협약체결 대상 확대	재량규정
4	안 제2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의 작성 및 <u>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u>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협정체결자에 대하여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 주민협정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 확대	재량규정
5	안 제31조의2 신설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u>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제6항)</u>	재량규정
6	안 제33조제1항(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등)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관할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시·군·구에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광역정책심의회 및 기초정책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제1항)</u> ※ ‘구’에도 기초정책심의회를 구성·운영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34조제1·3항 (지원조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u>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u> 업무를 지원하는 <u>조직</u>을 둘 수 있음(제1항)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u>다음 각 호의</u>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지원조직</u>을 둘 수 있음(제3항)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의 조사·관리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총괄·조정·관리 3. 사업계획의 총괄·조정·관리 4.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예산 등의 관리 6. 주민협정 및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및 평가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점검 8. 재원 조달 및 관리 9.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구’에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원조직 구성·운영 근거 마련	재량규정
8	안 제35조제3·4항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u>(이하 “<u>기초지원기관</u>”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음(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u>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u>(이하 “<u>지원기관</u>”이라 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음(제4항) ※ ‘구청장’도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9	안 제43조제2항(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u>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농촌생활서비스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u>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별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u>할 수 있음.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2항) ※ (수입감소) ‘구청장’도 농촌생활서비스시설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 근거 마련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정의)	○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 계획수립 대상 지방자치단체 확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비용 추가재정소요
2	안 제7조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같은 조 제2항 신설(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6	안 제33조제1항(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등)	○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 확대에 따른 심의회 운영비용 추가재정소요
3	안 제16조제1항(농촌협약 체결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u>대상 지방자치단체 확대</u>에 따라, 이와 연동하는 농촌협약 체결 및 이행 지원, 주민협정 이행 지원, 준공검사 및 인가의 전문기관 위탁, 지원조직 구성, 지원기관 지정, 조세 감면 등에 따라 <u>지출증가와 지방세 수입감소 등 추가재정소요</u>가 동시에 발생함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추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이와 연동하는 각종 비용 증가 및 수입 감소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4	안 제2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5	안 제31조의2 신설(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7	안 제34조제1·3항(지원조직)		
8	안 제35조제3·4항(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9	안 제43조제2항(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및 법적근거

- 농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법 제2조제9호)
- 국회는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21대국회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가결: 2023. 3. 27. (제21대국회 제403회 제8차 본회의)
- 시행: 2024. 3. 29. (법률 제19286호, 2023. 3. 28., 제정)

※ 사업내용 및 추진절차, 관련 예·결산 등은 [참고자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사업 개요 참고

□ 현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은 139개 시·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¹⁾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²⁾에 따른 농촌을 포함한 시·군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24.4.)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읍·면’을 포함한 시·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등 13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함
 - 이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고시³⁾하는 지역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즉, ‘읍·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시’ 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⁴⁾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시행 2015. 12. 2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전부개정]

4) 예를 들어,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의 경우, ‘읍·면’ 없이 8개 ‘동’(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대상 139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표 2]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 현황(139개 시·군)

구 분	시·군
경기(15)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포천시
강원(15)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충북(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15)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13)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21)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22)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울릉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1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세종(1)	세종시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
부산(1)	기장군
대구(2)	달성군, 군위군
울산(1)	울주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나. 정의—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및 수립권자의 범위 확대
(안 제2조제6·8호)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계획수립권자’의 범위를 구(자치구)로 확대하는 한편, 실무적으로는 ‘읍·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시’ 지역을 포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상지역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이 총 38개소로 추정됨

[표 3] 개정안의 대상지역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지방자치단체 (추정)

(단위: 개소)

구 분	시·도	시·군·자치구
‘동’만 포함하는 시 (21)	경기(16)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강원(3)	동해시, 속초시, 태백시
	전북(1)	전주시
	전남(1)	목포시
농촌을 포함하는 자치구 (17)	부산(3)	남구, 사하구, 서구
	대구(3)	동구, 북구, 수성구
	광주(5)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5)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1)	북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따라서 추가되는 지방자치단체 38개소가 추계 첫해인 2026년에 모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개소당 458백만원
 - 2024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공고금액 평균금액 (조달청 나라장터 조회)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용역비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고 현황: 2024년

(단위: 백만원)

공고기관 (수요기관)		용역명	공고일	공고금액
충북	청주시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 용역	2024/11/28	400
전남	여수시	여수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수립 용역	2024/11/26	326
경남	산청군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	2024/11/22	550
충북	옥천군	옥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	2024/11/18	200

공고기관 (수요기관)		용역명	공고일	공고금액
경남	함안군	함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	2024/11/13	300
경북	상주시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상주시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수립 용역	2024/10/29	736
충북	제천시	제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 용역	2024/10/24	480
전남	임실군	임실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기본, 시행계획 수립 용역	2024/10/21	458
경북	성주군	성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 용역	2024/10/7	500
강원	삼척시	삼척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	2024/10/7	500
경남	의령군	의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 용역	2024/10/4	500
전북	진안군	진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	2024/10/4	596
충남	서산시	서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수립용역	2024/9/26	445
경남	합천군	합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 용역	2024/9/25	480
충북	진천군	진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	2024/9/20	364
강원	삼척시	삼척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	2024/9/19	500
충북	영동군	영동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 용역	2024/9/19	473
전남	함평군	함평군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024/9/11	403
강원	평창군	평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용역	2024/9/3	497
전남	해남군	해남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기본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용역	2024/8/28	770
전북	장수군	장수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공고	2024/8/22	500
전북	남원시	남원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발굴 용역	2024/8/20	442
강원	횡성군	횡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	2024/7/16	400
경남	거창군 (거창군농업기술센터)	거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 발굴 용역	2024/8/5	430
경남	양산시	양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	2024/8/7	450
충북	음성군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4/7/31	400

공고기관 (수요기관)		용역명	공고일	공고금액
전남	곡성군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지역본부)	곡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수립 용역	2024/7/16	326
경북	문경시	문경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	2024/7/5	478
전북	고창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고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4/6/12	407
충북	괴산군	괴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용역	2024/5/29	497
경남	함양군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 용역	2024/5/21	400
전남	장흥군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장흥군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제안 용역	2024/4/4	407
충북	증평군	증평군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	2024/3/4	413
충남	부여군	부여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용역	2024/1/17	500
충남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용역	2024/1/8	500
평균				458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검색일: 2024.12.9.)

□ 추계결과,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추가로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첫해인 2026년에 174억 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추가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방자치단체 수(A, 개소)	38	—	—	—	—	38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단가 (B, 백만원/개소)	458	—	—	—	—	
추가재정소요 (C=A×B)	17,401	—	—	—	—	17,401

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대상으로 추가되는 지방자치단체 38개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정치이며, 추계 첫해인 2026년에 모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및 조달청 나라장터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광역·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등(안 제33조제1항)

□ 본 추계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유사 위원회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함)의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 수당 등에 대하여 추계

- (기초정책심의회 추가 설치 수)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총 38개소로 가정
 - 이때, 지방자치단체(38개소) 모두 기초정책심의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민간위원 수) 15명으로 가정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현행법령은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 구성하도록 규정⁵⁾
 - 따라서 최대 위원 수 30명의 절반 수준인 15명이 민간위원인 것으로 가정
- (회의개최 횟수) 최근 3년(2021~2023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유사위원회 회의개최 사례를 참고하여 연간 3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최근 3년간 유사위원회의 연평균 회의개최 횟수는 3.3회 수준
 - 이때, 각 기초정책심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6] 유사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2021~2023년

	2021	2022	2023	합계	(단위: 회) 연평균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 개발위원회 ¹⁾	3	3	2	8	2.7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4	4	4	12	4.0
합계	7	7	6	20	3.3

주: 1) 본회의 및 분과회의 포함

2) 본회의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4.9.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운영)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와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농업·농촌·토지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험이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⁶⁾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가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5억 6,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추가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개소, 명/개소, 회, 만원/명·회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수 (A, 개소)	38	38	38	38	38	—
1개 심의회당 민간위원 수 (B, 명/개소)	15	15	15	15	15	—
1개 심의회당 연간 회의개최 횟수 (C, 회)	3	3	3	3	3	—
1인당 회의참석수당 (D, 백만원/회·명)	0.3	0.3	0.3	0.3	0.3	—
추가재정소요 (E=A×B×C×D, 백만원)	513	513	513	513	513	2,565

주: 1.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약 50%로 가정

2. 기초정책심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자료: 개정안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2024.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218쪽)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assembly.go.kr

[참고자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개요

- (사업목적 및 법적근거) 농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사업내용)
 - ①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통한 공간 정비에 관한 사업
 - ② 농촌위해시설의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 사업
 - ③ 농촌지역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 ④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사업
 - ⑤ 농촌지역 일자리·경제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
 - ⑥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
 - ⑦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사업

□ 사업시행

- (사업시행자) 시장·군수 등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사업 시행절차)
 - 시·군에서 ① 기본계획의 수립·승인(법 제7조 및 제9조)
 - ② 시행계획의 수립·승인(법 제10조 및 제11조)
 - ③ 사업계획의 수립·승인(법 제27조 및 제28조)
 - ④ 사업 시행(법 제29조 내지 제31조)

□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 (역할)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원활한 안착 및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 등 농촌공간정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
- (법적근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 － (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정책 관련 조사·연구, 농촌협약 지원 등(제35조제1항)
 - － (광역지원기관) 기초지원기관 관리·지원, 지역협의체 구축·운영 지원 등(제35조제2항)
 - － (기초지원기관) 시·군 계획 수립 지원, 주민협정 체결 지원 등(제35조제3항)

- (지정현황) 중앙지원기관 4개소, 광역지원기관 8개소, 기초지원기관(파악 중)

- (중앙) (총괄)한국농어촌공사, (특화)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 (광역) 8개도 당 1개소씩 8개소* 지정 완료

* (경기)(재)경기도농수산물진흥원, (강원)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충북)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남)(재)충남경제진흥원, (전북)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남)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경북)영남대학교, (경남)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 (지원예산)

-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내역사업) 42억원('24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 예결산 현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 예산 및 결산: 2022~2025년(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안
농촌공간계획 및재생지원 (4160-431)		35,844	33,924	77,629	75,796	75,071	—	112,148
– 농촌공간정 비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재 구조화를 위해 난개발 정 비·이전에 필요한 철거비 등 지원	32,000	30,078	73,500	71,667	68,000	—	104,450
– 농촌공간 분 석·진단	농촌의 공간적 특성 분석 및 농업·농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지자체 농촌공간 계획 수립 등에 활용	240	240	240	240	—	—	—
– 농촌재생 화 산지원	지자체 등 농촌재생 및 농촌 협약 주체 대상 교육·컨설 팅 지원	468	468	416	416	—	—	—
– 농촌재생 활 성화지원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지구 선정 및 계속지구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230	230	432	432	—	—	—
– 농촌지역 종 합개발지원	지역개발사업 선정·모니터 링·컨설팅 지원 및 지역역 량강화 등	2,906	2,908	3,041	3,041	2,871	—	3,498
– 농촌공간 계 획 수립체계 지원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종합·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앙· 광역단위 지원기관 운영	—	—	—	—	4,200	—	4,200
농촌형교통모 델(자율) (4170-301)	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 역에 버스, 택시 등을 활용 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	20,928	20,928	21,655	21,655	24,924	—	26,596

사업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안
취약지역생활 여건개조(자 율) (4180-370)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 대상 생활인프라 확충, 노후주택 수리, 주민역량강화 등 지원	91,500	91,257	108,000	108,000	104,121	-	104,501
일반농산어촌 개발(자율) (4180-360)		531,565	454,521	504,254	508,025	525,341	-	472,509
- 농촌중심지 활성화	농촌중심지(읍·면 소재지) 문화·복지·보육 등 복합서 비스 거점 조성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체계 마련 지원	176,449	155,450	193,390	181,598	229,923	-	205,652
- 기초생활거 점조성	농촌중심지(하위 거점) 문 화·복지·보육 등 복합서비 스 거점 조성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체계 마련 지원	215,814	187,575	211,630	197,188	215,987	-	223,559
- 시군역량강 화	지역사회 역량향상 및 공동 체 활성화 지원	16,802	16,802	21,814	21,713	22,026	-	23,509
- 농촌신활력 플러스	지역 고유자원 활용한 신상 품 개발, 시설·장비 고도화, 앵커기업 유치 목적의 기반 시설 등 지원	122,500	94,694	77,420	107,526	57,405		19,789
합계		678,266	600,630	711,538	713,476	729,457	-	715,75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